

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

현행	개정
제25조 (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)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대상 협력업체(당해년도 기성실적 발생업체)를 대상으로 자체이행점검[사업수행실적평가표(별지 제7호 서식)]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체이행점검을 요청받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(기타 지원부문 포함, 이하 ‘사업’이라 칭함)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, 납품, 검수, 대가지불,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 대장을 운영하여야 하며, ①항의 협력업체가 작성한 자체이행점검표와 관리 대장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업수행실적평가표(별지 제7호 서식)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. 기술, 공정, 사업관리, 가점, 별점 항목: <u>소관부서</u> 나. 품질 항목 : 품질부서 다. 보안 항목 : 보안부서 4. ~ 5. (생략) ③ (생략) ④ <신설>	제25조 (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)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에 대한 사업수행실적평가 시 평가대상 협력업체(당해년도 기성실적 발생업체)를 대상으로 자체이행점검[사업수행실적평가표(별지 제10호 서식)]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자체이행점검을 요청받은 협력업체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 ② 사업부서장은 소관사업의 발주사업(기타 지원부문 포함, 이하 ‘사업’이라 칭함)에 대한 작업지시서 발급, 납품, 검수, 대가지불, 계약 변경 등 이행단계의 주요 점검항목에 대한 관리 대장을 운영하여야 하며, <u>협력업체가 작성한 ①항의</u> 자체이행점검표와 관리 대장을 참조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사업수행실적평가표(별지 제7호 서식)에 따라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. 1. ~ 2. (생략) 3.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. 기술, 공정, 사업관리, 가점, 별점 항목: <u>사업부서</u> 나. 품질 항목 : 품질부서 다. 보안 항목 : 보안부서 4. ~ 5. (생략) ③ (생략) ④ <u>품질항목 평가의 경우 해당평가항목 담당부서의 장은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결과 확인된 품질항목 문제점에 대하여 사업부서장에게 통보 후</u> 이의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.
부 칙	
1. (시행일) 이 절차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2. (경과조치)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.	